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3조제1항 관련)

1. 품질검사의 기준

대 상		검 사 기 준
법 제31조에 따른 품질표시를 한 유통 수산종자	가. 수산동물 종자	1) 이종 혼입 여부 2) 무게, 개수가 품질표시된 것과 같은지 여부
	나. 수산식물 종자	1) 이종 혼입 여부 2) 오염 정도 3)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가 품질표시된 것과 같은지 여부

2. 품질검사의 방법

가. 이종 혼입 여부

- 1) 수산동물종자: 무작위로 100마리를 추출하여 종을 동정(同定)한다. 형태적으로 종 동정이 불가능한 어린 개체의 경우에는 DNA 분석을 하여 판정한다.
- 2) 수산식물종자(김 유리사상체만 해당한다): 무작위로 1g을 추출한 후 유전자 분석을 통하여 이종 혼입 여부를 판정한다.

나. 오염 정도

수산식물종자 중 김 유리사상체와 미역, 다시마 등의 유리배우체에 한하여 규조류, 남조류 등에 의한 오염 정도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판정한다.

다. 무게, 개수 또는 씨줄길이

수산종자시료를 4번 반복하여 계량하여 평균 중량, 평균 개수 및 평균 씨줄길이를 계산하여 판정한다.